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2. 16(금) 10:00

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88호
- 나. 제 출 자 : 이인식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2. 2.
- 라. 회부일자 : 2024. 2. 2.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안 제5조 및 제6조)
- 라.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안 제7조)
- 마. 지정·위탁 및 지도·점검(안 제8조 및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4. 2. 5. ~ 2024. 2. 13.

5. 검토의견

가.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금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1)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2)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안 제5조 및 제6조)
 -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4)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안 제7조)

※ 2023년 서울시 자치구 전액구비 처우개선 사업현황		
자치구명	사업명	지원내용
중구	신규활동지원	입사후 첫 돌봄활동 신규돌보미에 최초 1회 5만원 지급
	추가활동지원	월100시간 이상 1일 2가정 이상 시간제 돌봄활동 진행한 돌보미에 월 5만원 추가수당 지급
성동구	아이돌보미 활동지원	소속된 모든 돌보미에게 월 5만원 교통비 지급
	장애인고용부담 지원	아이돌보미 중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에게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월 10만원 추가지원
서대문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비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돌보미에게 월 3만원 교통비 지급
강서구	처우개선수당(교통비)	월 근로시간 40시간 충족한 돌보미에게 월 5만원 교통비 지급
서초구	교통비 지원	소속된 모든 돌보미에게 일 1만원(월20회 한) 교통비 지급
	근무복 지원	연 5만원 이내 근무복(또는 앞치마)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예방접종비 및 건강검진비 실비 지원
강남구	급량비	월5만원~10만원 차등지원 (5만원 지원)아동2동 이상 및 월60시간 이상 돌봄시 (7만원 지원)아동2명 이상 및 월80시간 이상 돌봄시 (10만원 지원)아동 2명 이상 및 월100시간 이상 돌봄 또는 아동1명이상 및 월120시간 이상 돌봄시
		교통비 지급

5) 지정·위탁 및 지도·점검(안 제8조 및 제9조)

다. 검토의견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정 내 돌봄을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개별 양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증진과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이며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되어 아이돌봄에 대한 인력과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본 조례안은 가정 내 돌봄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인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일·가정 양립과 더불어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이돌봄 지원법」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금천구 아이돌보미 현황 : 104명(수시로 변동)

계	만40~50세	만50~55세	만55~60세	만60~65세	만65~70세	만70세 이상
104명	6명	20명	26명	32명	19명	1명

• 월 평균 신청 건수 : 3,941건 / 130명(돌봄아이)

• 아이돌보미 급여 및 수당 등 현황

구분	돌봄수당(기본시급)	서울시 추가 수당
급여 내용	10,110원	· 종일제 : 시간당 1,000원 추가 지급 · 시간제 : 시간당 500원 추가 지급
	아이돌보미에게 돌봄수당(기본시급) 외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 지원기관 특화교육비 지원 : 3,328천원 ▶ 돌보미 소통·힐링 등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돌보미 예방접종비 지원 : 6,510천원 ▶ 독감예방접종비 연1회 실비(1인당 35천원이내) 지원 - 영아전담안심돌봄사업비 지원 : 27,641천원 ▶ 영아전담 아이돌보미를 선정하여(20명) 추가수당(시간당 1천원, 월 최대 10만원) 지원 - 등하원아이돌봄사업비 지원 : 71,330천원 ▶ 추가수당(시간당 1천원,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병원동행아이돌봄사업비 지원 : 11,420천원 ▶ 추가수당(시간당 1천원, 1인당 월 최대 5만원) 지원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가구, 건수)

연도	구분	계	시간제					종일제
			소계	가	나	다	라	
2023	가구수	1,560	1,512	699	504	112	197	48
	연계건수	47,295	45,061	20,101	16,502	3,044	5,414	2,234
2022	가구수	1,579	1,517	681	467	148	221	62
	연계건수	43,301	40,170	18,167	12,513	4,000	5,490	3,131
2021	가구수	1,417	1,386	633	360	81	312	31
	연계건수	41,196	39,961	20,858	11,278	1,959	5,866	1,235
2020	가구수	1,352	1,281	553	337	71	320	71
	연계건수	37,364	33,874	14,936	7,547	2,403	8,988	3,490

※ 연간 누계 실적임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8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